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문제

(기초 사실)

1. 콘티넨탈국은 네오아틀란티스 대륙 동쪽에 있는 연안국이고, 쉘프국은 동아틀란티스해를 사이에 두고 콘티넨탈국의 동쪽 연안과 마주보고 있는 섬 국가로서, 양국 연안 사이의 거리는 모두 400해리에 이르지 않는다.

2. 콘티넨탈국과 쉘프국 사이의 동아틀란티스해의 해저지형은 콘티넨탈국으로부터 완만하게 깊어지다가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서 급경사로 떨어져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은 해구지형을 형성하며 이를 아틀라스 해구라고 부른다.

3. 콘티넨탈국은 2002년, 쉘프국은 2003년 UN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양국 모두 협약 가입에 즈음하여 국내법을 제정해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으로 선포하고 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륙붕 권원을 보유함을 규정했다.

4. 양국은 협약 가입과 동시에 협약 제287조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ITLOS')에서 해결하기로 한다는 선언을 각기 UN에 기탁했다. 양국이 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범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15부 제2절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선언한 바는 없다.

(EEZ/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입장)

5. 양국은 2003년 이래 동아틀란티스해의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위해 양국이 마주보는 북위 50도 및 55도 사이의 수역을 1차 대상수역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 간 입장 대립 속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경계획정을 위한 기점에 대하여는 상호 견해차가 없다.

6. 콘티넨탈국은 대륙붕 경계의 경우 아틀라스 해구까지 자국의 대륙붕 권원이 연장된다는 입장 하에 해저의 지형·지질학적 특성을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여 쉘프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선과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바깥한계 사이의 중간선으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EEZ 경계는 양국 기선 간 중간선으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쉘프국은 동아틀란티스해에서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양국 기선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와 대륙붕의 경계가 단일하게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양국은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틀란티스해의 대륙붕에 대한 단독 탐사·개발을 자제해 왔고, 공동탐사·개발을 위한 잠정약정은 별도 체결하지 않았다. 양국 외에 동아틀란티스해에 대해 EEZ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는 국가는 없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에 대한 입장)

9. 콘티넨탈국은 협약 제76조 제1항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라는 '자연연장 기준'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라는 '거리 기준'에 입각한 두 가지 구분되는 대륙붕 권원의 근거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양자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동아틀란티스해에서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10. 쉘프국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에서는 '거리 기준'이 '자연연장 기준'을 대체하여 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른 연안국의 대륙붕 권원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에서는 '거리 기준', 200해리 이원에서는 '자연연장 기준'이라는 상이한 두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타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연장될 수 없으며, 양안 간 400해리 미만인 동아틀란티스해에서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 콘티넨탈국은 2010년 1월 5일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을 반영해 UN대륙붕한계위원회(이하 'CLCS')에 동아틀란티스해 방면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 예비정보 문서(이하 '예비정보')를 제출했다. 이어서 콘티넨탈국은 추가 자료 확보 및 분석을 거쳐 2023년 3월 4일 이 해역에 대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문서(이하 '정식정보')를 제출했다.

12. 이후 쉘프국은 동아틀란티스해에서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CLCS 절차규칙 부속서 I 5(a)에 따른 해양분쟁이 존재하므로 콘티넨탈국이 제출한 정식정보를 CLCS가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공한을 CLCS에 제출했다. CLCS는 2024년 2월 26

일 콘티넨탈국이 제출한 정식정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심의 순번이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쉘프국의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

13. 쉘프국은 이즈음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이지만 콘티넨탈국이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도 속하는 이른바 노틸러스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해저 바닥에 자켓 구조물을 고정시킨 후 해상에 풍력 터빈을 설치한 시설들 다수를 운용하는 계획으로서, 쉘프국은 육상에서 기본 구조물 및 터빈 제작을 마친 후 2024년 5월 16일부터 노틸러스 해역에 실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14. 콘티넨탈국은 노틸러스 해역에는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이 미치므로 그 해저·하층토 위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콘티넨탈국이 협약 제80조에 따라 자국의 대륙붕상에 시설을 건설하고 그 건설·운용·사용을 허가·규제할 권리(이하 '시설 건설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쉘프국에게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15. 쉘프국은 노틸러스 해역이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 위치한 콘티넨탈국의 EEZ 권원이 미치지 않는 쉘프국의 EEZ로서 이곳에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협약 제56조 제1항 및 제60조에 따른 쉘프국의 EEZ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반박했다. 또한 백보 양보해 노틸러스 해역에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은 콘티넨탈국의 협약 제80조에 따른 대륙붕상의 시설 건설 등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쉘프국이 해당 대륙붕에 대해 성실하게 권리를 주장해 온 이상 콘티넨탈국에 대한 권리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제소에 이르기까지)

16. 이후 콘티넨탈국은 2024년 5월 7일 쉘프국에 외교공한을 보내 해상풍력발전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7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쉘프국은 2024년 5월 13일 외교공한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쉘프국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며 콘티넨탈국의 협상 제안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 후 가능한 의견이 별도 송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17. 콘티넨탈국 외교장관은 2024년 5월 14일 쉘프국 외교장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쉘프국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진행할 경우 이는 쉘프국의 EEZ에서 콘티

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며, 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의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협약 제15부 절차 외에 분쟁을 회부할만한 기존에 합의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양국이 협약 제287조에 따라 해양법 문제의 분쟁해결기관으로 선택한 ITLOS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에 대한 회신을 24시간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 쉘프국은 24시간이 지나도 콘티넨탈국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이 예정된 2024년 5월 16일 육상에서 완성된 자켓 구조물과 터빈을 실은 쉘프국의 작업선박들이 노틸러스 해역으로 진입하여 시설 건설작업을 개시했다.

19. 콘티넨탈국은 2024년 5월 17일 ITLOS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 문제와 쉘프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위법성을 묻는 소장(application)을 제출했다. 이후 ITLOS 소장과의 협의 하에 콘티넨탈국은 제소변론서(memorial)를, 쉘프국은 피소변론서(counter-memorial)를 각기 지정된 기한 내에 ITLOS에 제출하기로 했고, 양국은 관할권에 대한 진술도 위 변론서에 포함시켜 ITLOS가 본안에서 심리하는 데 동의했다.

20. 양국은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submissions)를 준비했다.

콘티넨탈국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ITLOS는 콘티넨탈국의 청구들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2.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른 콘티넨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쉘프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연장될 수 있다.
3. 쉘프국은 노틸러스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을 개시함으로써
   가. UN해양법협약 제80조에 따른 콘티넨탈국이 향유하는 대륙붕상의 시설 건설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고,
   나. UN해양법협약 제56조 제2항에 따른 쉘프국의 EEZ에서 콘티넨탈국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 UN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에 따른 콘티넨탈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다.

쉘프국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ITLOS는 콘티넨탈국의 청구들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2. 콘티넨탈국의 제2항 청구를 기각한다.
3. 콘티넨탈국의 제3항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1. 양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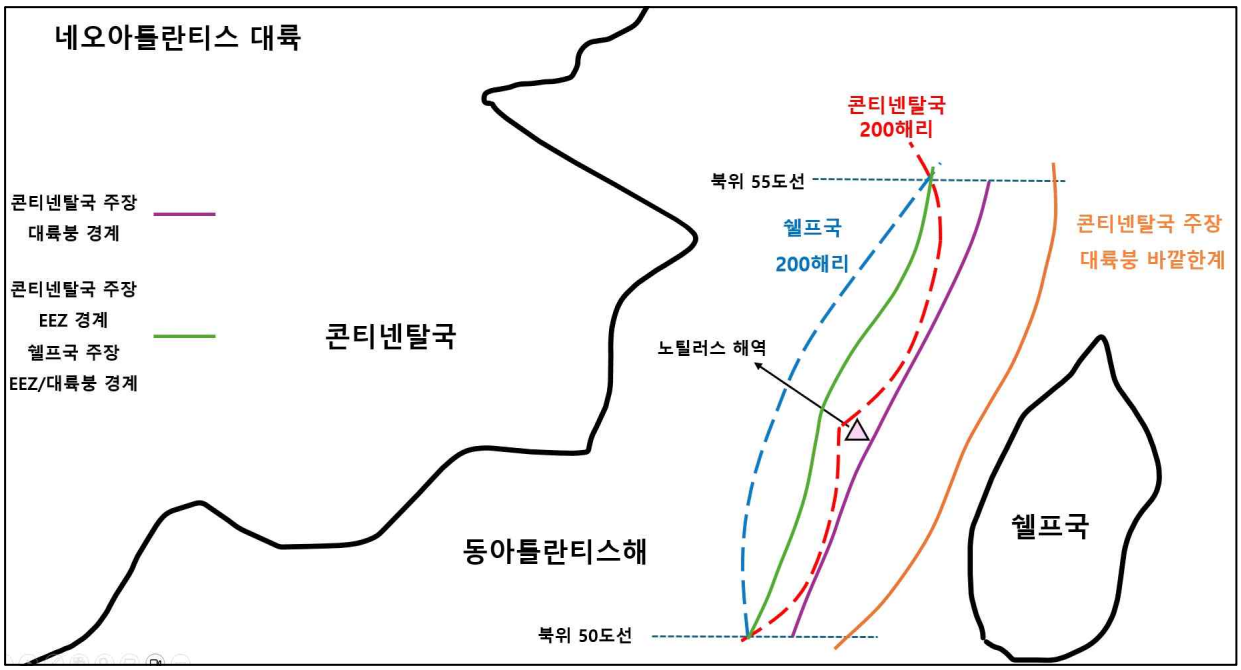
설문과 아래 해역도를 참고하여 양측의 청구취지에 따른 세부 주장사항 및 논거를 각각 변론서 형식으로 제출하시오. 단, 콘티넨탈국의 제2항 청구에 관하여는 일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이 타국의 200해리 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다툼만 있으며, 콘티넨탈국의 제3항 각 청구별 쟁점은 콘티넨탈국이 자국이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바깥한계까지 대륙붕 권원을 보유함을 전제로 양측 변론서를 작성하시오.